

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

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(☎ 044-201-3778)

▶ 국토경관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.

- 지금까지 경관계획은 구속력이 없는 임의계획으로 실효성이 부족하고,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수립권한이 없었습니다.
- 시·도지사 및 인구 10만 초과 시장·군수에게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지역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도모할 계획입니다.
 - 경관법 개정으로 인한 경관계획 수립 의무 지자체는 시·도 17개와 시·군 68개 등 총 85개로 확대될 계획입니다.
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>국토교통뉴스>보도자료>생남갑 아파트 줄이고 도시디자인을 창의적으로!

<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주요내용>

- ▶ 추진배경 : 경관계획의 실효성 확보 및 추진력 제고
- ▶ 주요내용
 - ①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대상
 - 시·도지사 및 인구 10만 초과 시장·군수
 - 특·광역시외의 자치구·군·경제자유구역청 등도 필요시 경관계획 수립 가능
- ▶ 시행일 : 2014.2.